

의안 번호	2527	<b>[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12. 5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5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8.(목)

## 2. 제안이유

-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와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직원 전체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수정(안 제16조제4항)  
(현행)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→ (개정) 5년 이상 재직공무원
- 나. 특별휴가 신설(안 제16조제9항~ 제12항)
  - 군 입영·전역휴가, 결혼준비휴가, 새내기도약휴가,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 특별휴가

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59조
- 나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 7

## 5. 검토사항

### (1) 제정배경

-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,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과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자부심을 제고하여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임

## (2) 내용검토

### 가. 특별휴가(안 제16조)

- 제4항 ‘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 중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수 있다’ 라는 내용을 ‘5년 이상’ 으로 개정
- 제9항~10항 신설
  - 군 입영 확정 공무원은 입영일 전날 및 전역일 다음날 각 1일의 휴가
  - 재직 중 공무원이 결혼을 준비할 경우 결혼식이 있는 주 평일에 결혼준비 휴가 1일
  -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해당 재직기간중 새내기도약휴가 2일
 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 7일 이내의 특별휴가 마련

## 6. 검토 사항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, 특별휴가 신설 등을 통해 공무원 사기진작과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 자부심을 제고하여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주요 내용은 조례 제16조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, 군 입영·전역휴가, 결혼준비휴가, 새내기도약휴가,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임.
-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근 거 법 규

##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